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0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1,652,136,344,186
	비과세	598,839,522,688
	감면	1,053,296,821,498
지방세 징수액(B)		23,393,017,226,737
비과세·감면율(A/A+B)		6.6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0년(결산)	비중
총 계		1,652,136,344,186	100.0
1	일반공공행정	410,778,489,621	24.9
2	공공질서 및 안전	6,272,936,467	0.4
3	교육	104,649,079,909	6.3
4	문화 및 관광	62,327,394,842	3.8
5	환경보호	14,002,845,522	0.8
6	사회복지	324,188,108,840	19.6
7	보건	3,812,727,641	0.2
8	농림해양수산	807,758,857	0.0
9	산업·중소기업	239,198,119,444	14.5
10	수송 및 교통	60,218,449,651	3.7
11	국토 및 지역개발	190,929,520,426	11.6
12	과학기술	45,708,332	0.0
13	국가	145,542,621,556	8.7
14	외국	2,541,225,699	0.2
15	기타	86,821,357,379	5.3

3. 세목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0년(결산)	비중
총 계		1,652,136,344,186	100.0
	보통세	1,629,574,398,834	98.6
	취득세	991,225,188,584	60.0
	주민세	72,156,426,831	4.3
	재산세(도시지역분)	534,786,262,152	32.4
	자동차세	31,406,521,267	1.9
	목적세	22,561,945,352	1.4
	지역자원시설세	22,561,945,352	1.4

4. 비과세 ·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정당에 대한 비과세	72,992,984	628,269,585	555,276,60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293,963,015,102	321,762,550,145	27,799,535,04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0,325,422,830	34,124,899,350	23,799,476,52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881,112,700	869,564,418	-11,548,282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68,342,557	54,253,587	-14,088,97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14,191,921,948	15,297,898,163	1,105,976,21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5,304,066,869	38,041,054,373	22,736,987,504
갯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380,105,055	12,313,124	-367,791,931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5,945,586,024	6,260,623,343	315,037,319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607,900,060	561,300,550	-46,599,51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3,174,222,777	2,794,424,996	-379,797,781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543,027	579,252	36,225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11,298,966,043	98,744,446,868	-12,554,519,175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11,780	94,160	82,38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4,771,001,976	2,548,234,083	-2,222,767,89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49,258,895,619	55,378,830,646	6,119,935,027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0	335,800	335,800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1,959,242,755	2,076,364,815	117,122,06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2,546,727,968	3,828,600,489	1,281,872,521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1,863,167,260	0	-1,863,167,26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20,349,441	1,043,263,092	-77,086,349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0	21,572	21,572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14,098,913,180	14,002,823,950	-96,089,2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1,009,617,600	0	-1,009,617,6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24,160,082,446	23,648,402,033	-511,680,413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7,755,866	21,224,165	3,468,299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9,473,667,450	10,391,283,396	917,615,94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463,917,753	1,782,899,130	-681,018,623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0	35,595,000	35,595,00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331,152,348	9,681,051,021	1,349,898,67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258,406,659	281,958,062	23,551,403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1,846,219,390	3,366,737,420	1,520,518,03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04,981,081,633	263,290,497,783	58,309,416,150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003,024,187	7,112,660,787	6,109,636,60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4,324,618,127	4,341,089,523	16,471,396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222,309,990	234,710,520	12,400,530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119,131,316	943,336,378	-3,175,794,938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918,039,227	1,718,013,755	799,974,528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180,813,537	1,151,377,508	970,563,971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77,726,500	138,600,740	-39,125,7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3,063	3,201	138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391,213,760	163,215,080	-227,998,68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391,393,683	314,065,206	-77,328,477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735,194,810	191,874,630	-543,320,18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2,861,405,442	4,322,096,587	1,460,691,145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453,931,310	438,942,120	-14,989,19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23,697,444,360	44,472,890,070	20,775,445,71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124,259,110	259,518,750	-864,740,36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298,040,920	688,018,090	-610,022,83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0	35,311,880	35,311,88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24,841,746,600	37,551,976,574	12,710,229,97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558,997,324	23,198,676	-1,535,798,648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8,365,440	295,240	-18,070,20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34,889,990,951	151,405,871,457	16,515,880,506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9,200,387,037	4,490,447,400	-4,709,939,637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26,772	229,351	2,579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6,463,951,560	26,389,910	-6,437,561,650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11,025,375,850	10,168,717,100	-856,658,75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34,776,013,070	33,368,660,650	-1,407,352,420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13,230,960	0	-13,230,96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1,956,200,690	12,164,005,240	207,804,55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7,049,192,600	7,454,977,620	405,785,020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93,200,760	1,561,729,020	1,468,528,2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51,621,477,690	163,302,179,220	11,680,701,53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4,884,414,515	2,660,594,476	-2,223,820,039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10,482,981,030	11,713,896,830	1,230,915,8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4,169,446,466	4,236,143,260	66,696,794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5,841,056	45,708,332	39,867,276
국가에 대한 비과세	133,453,156,736	140,590,327,609	7,137,170,873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716,900,390	2,460,294,260	-256,606,13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431,261,951	2,491,999,687	60,737,736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3,312,522,434	2,500,505,146	-812,017,288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8,920,709	8,511,753	-408,956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379,425,600	32,208,800	-347,216,800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3,122,836,210	2,454,097,380	-668,738,83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938,352,200	603,495,560	-334,856,640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47,622,544,230	55,179,332,890	7,556,788,66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25,179,763,720	13,522,576,240	-11,657,187,48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8,326,993,522	11,971,301,545	3,644,308,023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5,685,976	11,779,416	-3,906,560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748,095,621	758,121,049	10,025,428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72,046,398	72,038,199	-8,199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708,498,020	1,744,773,420	36,275,40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6,892,239	0	-16,892,23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338,773,790	503,841,680	165,067,890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410,778,489,621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321,762,550,145
		취 득 세	42,703,158,600
		주 민 세	13,175,779,110
		재 산 세	257,697,728,608
		자 동 차 세	222,916,432
		지역자원시설세	7,962,967,395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34,124,899,350
		취 득 세	34,124,899,35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869,564,418
		재 산 세	771,119,277
		지역자원시설세	98,445,141
		-	
4	정당에 대한 비과세 - 정당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②·③)	소 계	628,269,585
		취 득 세	551,970,000
		주 민 세	66,879,320
		재 산 세	7,814,286
		지역자원시설세	1,605,979
5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54,253,587
		재 산 세	52,579,952
		지역자원시설세	1,673,635
		-	
6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15,297,898,163
		재 산 세	14,921,399,479
		지역자원시설세	376,498,684
		-	
7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 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38,041,054,373
		취 득 세	30,434,780,660
		재 산 세	7,606,273,713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6,272,936,467
8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12,313,124
		취 득 세	6,246,640
		재 산 세	6,066,484
9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6,260,623,343
		취 득 세	89,531,610
		재 산 세	2,439,725
		자동차세	6,168,588,449
		지역자원시설세	63,559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교 육		합 계	104,649,079,909
1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2,794,424,996
		취 득 세	573,492,520
		주 민 세	1,961,583,460
		재 산 세	200,766,742
		지역자원시설세	58,582,274
11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579,252
		재 산 세	579,252
		-	
12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	소 계	98,744,446,868
		취 득 세	11,268,471,240
		주 민 세	32,397,494,91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재 산 세	49,850,017,616
		지역자원시설세	5,228,463,095
		-	
13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 	소 계	94,160
		지역자원시설세	94,160
		-	
14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③, §44) 	소 계	561,300,550
		취 득 세	561,300,550
		-	
15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2,548,234,083
		취 득 세	1,877,184,460
		재 산 세	671,049,623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62,327,394,842
16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 	소 계	55,378,830,646
		취 득 세	20,852,756,93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주 민 세	2,699,606,493
		재 산 세	28,067,406,152
		지역자원시설세	3,759,061,071
17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335,800
		지역자원시설세	335,800
		-	
18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2,076,364,815
		주 민 세	2,076,364,815
		-	
19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3,828,600,489
		취 득 세	639,354,050
		재 산 세	3,134,969,700
		지역자원시설세	54,276,739
		-	
2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 (서울 성북)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 계	1,043,263,092
		재 산 세	1,043,259,122
		지역자원시설세	3,970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14,002,845,522
2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서울 서초)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제0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소 계	21,572
		재 산 세	21,572
		-	
		-	
22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5~1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2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세 1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③)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소 계	14,002,823,950
		취 득 세	14,002,823,950
		-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324,188,108,840
23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23,648,402,033
		취 득 세	10,636,863,090
		자동차세	13,011,538,943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2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21,224,165
		재 산 세	21,215,995
		지역자원시설세	8,170
		-	
25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4,341,089,523
		취 득 세	1,218,634,090
		주 민 세	1,082,743,221
		재 산 세	1,826,277,607
		지역자원시설세	213,434,605
		-	
26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 (제주)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제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 계	10,391,283,396
		취 득 세	7,625,314,740
		재 산 세	2,765,968,656
		-	
2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1,782,899,130
		취 득 세	1,761,756,670
		재 산 세	17,881,460
		지역자원시설세	3,261,000
		-	
28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 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세	소 계	35,595,000
		취 득 세	35,595,00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면제,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29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2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소 계	234,710,520
		취 득 세	370,000
		재 산 세	234,340,520
		-	
3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9,681,051,021
		취 득 세	6,191,883,500
		주 민 세	12,761,010
		재 산 세	86,386,413
		자동차세	3,383,344,949
		지역자원시설세	6,675,149
		-	
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 보훈병원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 독립기념관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소 계	281,958,062
		취 득 세	14,973,410
		재 산 세	266,984,652
		-	
3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3,366,737,420
		취 득 세	3,366,737,420
		-	
3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	소 계	263,290,497,783
		취 득 세	225,901,937,920
		재 산 세	37,388,559,863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p>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34	<p>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제주)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 -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소 계	7,112,660,787
		취 득 세	7,111,911,280
		재 산 세	749,507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보건		합 계	3,812,727,641
35	<p>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7) 	소 계	943,336,378
		취 득 세	228,979,720
		재 산 세	714,356,658
		-	
36	<p>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중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소 계	1,718,013,755
		취 득 세	1,031,513,030
		재 산 세	686,500,72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	
37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40) 	소 계	1,151,377,508
		취 득 세	1,116,480,000
		재 산 세	34,897,508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807,758,857
38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소 계	138,600,740
		취 득 세	138,496,630
		주 민 세	104,11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 (제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 경감 - (제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 (제주)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경감 		
39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3,201
		재 산 세	3,201
4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부칙 §8 취득세 면제)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163,215,080
		취 득 세	163,215,080
4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314,065,206
		재 산 세	314,057,26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지역자원시설세	7,940
42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14④)	소 계	191,874,630
		취 득 세	191,874,630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239,198,119,444
4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	소 계	4,322,096,587
		취 득 세	4,270,565,700
		재 산 세	51,530,887
		-	
44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259,518,750
		취 득 세	259,518,750
45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	소 계	688,018,090
		취 득 세	688,018,09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p>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4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6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당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 (광주, 광주북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	
46	<p>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③) - 제00조(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2020년7월13일 이후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지방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소 계	295,240
		취 득 세	295,240
		-	
47	<p>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소 계	37,551,976,574
		취 득 세	37,551,976,574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0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 (인천·광주·강원·전남)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제주)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강원·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구·경북)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기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고용우수)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48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35,311,880
		취 득 세	35,311,880
		-	
49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①) -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②)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소 계	23,198,676
		재 산 세	13,144,979
		지역자원시설세	10,053,697
		-	
5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151,405,871,457
		취 득 세	145,692,337,260
		자동차세	5,713,534,19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	
51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①, §57의2⑤ 1·2·4·5·6·7·8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438,942,120
		취 득 세	438,942,120
		-	
52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5호, §57의2⑤ 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 	소 계	44,472,890,070
		취 득 세	44,472,890,07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60,218,449,651
53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4,490,447,400
		취 득 세	372,222,830
		재 산 세	4,118,224,570
		-	
54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세 1% 세율 및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 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소 계	229,351
		지역자원시설세	229,351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55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1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5)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세율인하 및 1.25/1000 감면	소 계	26,389,910
		취 득 세	26,389,910
		-	
56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10,168,717,100
		취 득 세	10,168,717,100
		-	
57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90만원 이하) 및 공제(90만원초과 시 9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및 공제(140만원초과 1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33,368,660,650
		취 득 세	33,368,660,650
		-	
58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④)	소 계	12,164,005,240
		취 득 세	12,164,005,240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90,929,520,426
59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7,454,977,620
		취 득 세	7,454,977,620
		-	
60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 계	1,561,729,020
		취 득 세	1,561,729,02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p>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③)</p> <p>- (제주)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조례)</p>	-	
61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p> <p>-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p> <p>-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75% 경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75% 경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④)</p> <p>-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경감, 60제곱미터 75% 경감, 80 제곱미터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⑤)</p>	소 계	163,302,179,220
		취 득 세	163,302,179,220
		-	
62	<p>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②)</p> <p>-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p>	소 계	2,660,594,476
		취 득 세	1,021,510
		재 산 세	2,659,572,966
		-	
63	<p>산업단지에 대한 감면</p> <p>-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p> <p>-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p> <p>-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p> <p>-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수도권의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p> <p>-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p>	소 계	11,713,896,830
		취 득 세	11,713,896,83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감(수도권의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재산세 5년간 75% 감면		
6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4,236,143,260
		재 산 세	4,236,143,260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과학기술		합 계	45,708,332
65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44의2)	소 계	45,708,332
		재 산 세	45,708,332
		-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국 가		합 계	145,542,621,556
66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140,590,327,609
		취 득 세	7,311,606,200
		주 민 세	18,456,570,405
		재 산 세	110,428,498,097
		자동차세	574,518,407
		지역자원시설세	3,819,134,500
		-	
67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2,460,294,260
		취 득 세	2,460,294,260
		-	
68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491,999,687
		재 산 세	2,381,012,988
		지역자원시설세	110,986,699
		-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외 국		합 계	2,541,225,699
69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2,500,505,146
		취 득 세	259,833,220
		주 민 세	20,266,270
		재 산 세	2,157,828,363
		자동차세	4,369,302
		지역자원시설세	58,207,991
		-	
70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90, §126 3호)	소 계	8,511,753
		자동차세	8,511,753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	
71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소 계	32,208,800
		주 민 세	32,208,800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기 타		합 계	86,821,357,379
72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11,779,416
		취 득 세	10
		재 산 세	4,720,027
		지역자원시설세	7,059,379
		-	
73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2,454,097,380
		취 득 세	2,454,097,380
		-	
74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73③)	소 계	603,495,560
		취 득 세	603,495,560
		-	
75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55,179,332,890
		취 득 세	55,179,332,89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7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 계	13,522,576,240
		취 득 세	13,522,576,240
		-	
77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11,971,301,545
		취 득 세	9,723,017,020
		자동차세	2,248,284,525
78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758,121,049
		지역자원시설세	758,121,049
		-	
79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소 계	72,038,199
		주 민 세	71,995,5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재 산 세	42,699
		-	
8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탁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탁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744,773,420
		취 득 세	1,744,773,420
		-	
8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503,841,680
		주 민 세	102,069,400
		재 산 세	298,163,650
		자동차세	70,914,310
		지역자원시설세	32,694,320
		-	